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정도 의원

2. 찬 성 자 : 김낙관 의원 외 9인

3.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전반에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원표시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1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전반에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보조금 교부 시 지자체 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에게 이러한 알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과거에는 주로 대규모 건축 공사나 고정 시설물에만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 고가의 장비, 심지어 일회성 행사의 현수막과 팸플릿까지 표기 대상을 구체화하며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의 개념을 분리하여 적용 범위를 입체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은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는 표지판의 규격이나 재질, 디자인 등을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맞춰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가시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제도 시행 초기에 충분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